

부속한방병원 발전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2020. 03. 20.

3차 개정 2023. 05.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96조 및 직제규정 제17조에 명시된 부속한방병원의 발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속한방병원 발전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부속한방병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부속한방병원의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부속한방병원의 건설 및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속한방병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총장, 위원장 또는 부속한방병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5.16)

1. 부총장 (개정 2022.02.18)
2. 학교법인 상지학원 사무국장
3.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 (개정 2022.04.20., 2023.05.16)
4. 한의과대학장 (개정 2023.05.16)
5. 부속한방병원장
6. 부속한방병원 진료부장 (개정 2023.05.16)
7. 총장이 추천하는 2인 (개정 2023.05.16)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2.02.18)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는 기획예산팀이 주관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

다.

제8조(자료제출 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외부전문가 자문) ① 위원장은 부속한방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5.16.]

제9조(실무소위원회) ①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안에 실무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팀-193, 2020.03.20)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09, 2022.02.18)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123, 2023.05.16.)

이 규정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